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비료, 사료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품목을 필수농자재로,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에너지로 정의함(안 제2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수농자재 품목,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지원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급망 위험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의 범위 내에서 농업경영체에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필수농자재 가격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II. 검토의견

- 안 제7조는 공급망 위협으로 인해 필수농자재등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7조제2항은 회계법인이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의 산정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자 하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려는 것인데,

안 제7조제2항에는 회계법인이 적정성을 검증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회계법인의 산정 가격 적정성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안 제7조제3항은 ‘농가구입가격지수’를 “필수농자재등 구입 당시의 가격변동을 지수화하여 통계청장이 산정·공표하는 지수”로 정의하고 있는데,

국가데이터처는 매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구입가격지수를 “농업경영체의 가게 및 경영활동에 투입된 407개 품목의 2020년 기준(2020=100)의 가격지수”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부합하게 규정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안 제7조제4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품’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의미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물품 중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안 제7조제4항제4호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 판매가격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 대상자(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법문언에 명확히 규정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생 략)	제7조(필수농자재등 지원) ① (생 략)

제 정 안	수 정 의 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가격의</u>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을 통하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u>가격의</u> 적정성을 <u>검증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품목별·경영규모별 지원상한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다만, 지원기준을 정할 때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률 및 농가구입가격지수(필수농자재등 구입 당시의 가격변동을</u> <u>지수화하여 통계청장이 산정·공표하는 지수를</u> 말한다)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u>제조·판매업자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가격 중 필수농자재 가격의</u> 범위를 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을 통하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산정한 <u>제품 가격의</u> 적정성을 <u>검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필수농자재 가격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u>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품목별·경영규모별 지원상한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이 경우, 지원기준을 정할 때에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률 및 농가구입가격지수(국가데이터처장이 공표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활동에 투입된 품목의 가격지수를</u> 말한다) 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u>제조·판매업자의 제품(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u>

제 정 안	수 정 의 건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u>지원에서 제외</u>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제품별 판매가격</u>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	<u>사용하는 물품 중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u>)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u>지원을 하지</u> 아니할 수 있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u>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 제조·판매가격</u> 산정 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조·판매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

○ 그 밖에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